
[디자인보호법 연습 제1판 정오표]

069. (문제 수정)

甲은 커피 전문점으로부터 굿즈 제작을 의뢰받아 캠핑용 의자에 관한 디자인 A를 완성하였다. 이후, 甲은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 A에 대한 권리화를 위해 디자인등록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. 甲이 등록받은 디자인 A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.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087. (해설 수정)

① |○| [심사기준] (부품의 경우) 부품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며, 완성품의 부분의 형태로 인정될 수 있고,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~~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이 아니~~므로,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.

089. (문제 보기 수정)

④ 지정글자 도면,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**제33조** 제1항 본문 위반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.

111. (해설 수정)

⑤ |X| [제62조] 제35조 제2항에 위반된 경우이며, **이 경우 심사등록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만 일부심사등록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**

115. (해설 수정)

③ |×| **[제48조]**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,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.

235. (해설 수정)

② |×| [제95조] (제2항)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,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. (→ 디자인권 상호 간에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**틀린** 지문입니다)

⑤ |○| **부분디자인이** 선출원일 경우, 양자는 등록받고자 하는 범위 및 보호방법이 상이하여 모두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으나, 전체디자인이 부분디자인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면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.